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김정태, 박순규, 권순선,
김경영, 김용석, 전병주, 오한아,
강동길, 이영실, 고병국, 여 명,
최 선, 이동현 의원 (1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별표 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”을 “장애의 정도가
심한 장애인은”으로, “거쳐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대상자

※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